



국립중앙의료원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 목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계획 변경 사항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근거
 - 가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25조
 - 나.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-447(2022.3.24.)
 - 다.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-1495(2022.3.24.)
3.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 기관 운영의 적절성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.
4.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-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‘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계획’ 을 변경하였으며,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도 및 사군구 응급의료 담당께서는 관할 지역 내 응급 의료기관에 공지하여 응급의료기관이 평가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변경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가점 사항	○ 중증응급진료센터 및 감염병전담병원(코로나19거점전담병원 포함) 운영 중단 기간 기준 명시 - 평가대상 기간 중 2022년 2월 15일 이후 응급실 운영 중단 기간이 연속 1개월 이하
	○ ‘(임시지표) 코로나-19 확진자 지역별·종별 분담률’ 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명시 - 해당 의료기관 수용 분담률이 평균값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

* 세부 내용: 붙임 1, 2 참조

□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변경 사항 적용: 공문 시행일자

- 붙임 1.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_변경 전·후 비교표
2.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_변경. 끝.

국립중앙의료원장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보건의료정책과장), 부산광역시(보건위생과장), 대구광역시(보건의료정책과장), 인천광역시(보건의료정책과장), 광주광역시(건강정책과장), 대전광역시(감염병관리과장), 울산광역시(식의약안전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보건정책과장), 경기도지사(보건의료과장), 강원도지사(공공의료과장), 충청북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 충청남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보건의료과장), 전라남도지사(식품의약과장), 경상북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 경상남도지사(식품의약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보건건강위생과장)

주임연구원 **이한나** 팀장직대 조혜경 센터장직대 전결 03/25
고은실

협조자

시행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-451 (2022.03.25.) 접수 ()
우 045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(을지로 6가 18-79) / www.nmc.or.kr
전화 02-6362-3453 /전송 / hanna.lee@nmc.or.kr / 공개